

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(자동차) 긴급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중소기업(자동차분야)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5. 2.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용자규모 : 100억 원

※ 은행협조 용자: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,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

2. 자금의 용도

구분	자금용도	세부내용
경영안정 자금	기업 경영활동	○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-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- 정책자금 대출(시설자금 포함)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

※ **【불임 2】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한 불가**

3. 지원대상

○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*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지원대상 업종(자동차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 限) **【참고 1】**

- ▶ 제조업(분류번호 C) :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
 - ※ 제조업의 경우 **【참고 1】**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
- ▶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- ▶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(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)
- ▶ 기술혁신기업 : 기술창업기업(업력 7년미만), 중소벤처기업, 중소이노비즈기업
- ▶ 경영혁신형기업 : 유망창업기업(업력 7년미만), 중소기업비즈기업
- ▶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(센터 확인증 소지업체)
- ▶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(승인증서 소지업체)

○ 지원 제외대상 **【참고 2】**

- ▶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(단,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)
- ▶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
- ▶ 업종 전업률이 30% 미만인 업체(단,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)
- ▶ 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- ▶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- ▶ 신청일 현재, 휴·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업체
- ▶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*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보증, 보험은 제외)
 - *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sims.go.kr>) 기준
- ▶ 신청일 현재 구·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
(단,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)
- ▶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
(단,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: 연장용)
- ▶ 100% 외주가공 업체,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
- ▶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(단, 제조업(사업자등록증 상 '제조업'이 기재되고, 결산재무제표 상 '제품매출액'이 표기)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)
- ▶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
- ▶ **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,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**
- ▶ 지원 제외 대상 업종
 - * 건설업 제외(단. 산업 생산시설 건설, 환경설비 건설, 조경 건설, 냉난방공사, 전기통신공사,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, **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**^{신규} 등은 지원가능)

4. 용자한도

- 업체당 5억원 이내 (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)
-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/4이내
 - ※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'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' 등으로 매출액 산정,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

5. 대출조건 : 2~4년간 기업체 선택

- 2년거치 일시상환
- 1년거치 2년 분할상환
-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 - ※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, 시는 이차보전 지원

6. 지원내용

-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 - ※ 단, 대출차주는 1%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.
(울산광역시의 이차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%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%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)

구 분	2년거치 일시상환	1년 거치 2년 분할상환	2년 거치 2년 분할상환
1회 용자 신청업체	2.5%	2.5%	1.7%
2~3회 용자 신청업체	2.0%	2.0%	1.45%
4회 이상 용자 신청업체	1.5%	1.5%	1.2%

- 이자 지원 우대(0.5% 가산) 대상

- ▶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
- ▶ 벤처기업(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)
- ▶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(신청일 기준 3년 이내)
- ▶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가족친화기업(여성기업 확인증, 장애인증명서, 인증서 구비)
 - *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
- ▶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(지정서 구비)
- ▶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(센터 확인증 구비)
- ▶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(인증서 구비)
- ▶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(승인증서 구비)

- 보증료 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*에 한함) : 최대 1.2%
 - *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/ 울산광역시-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

7. 지원결정 취소대상 (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)

- 지원결정 후 폐업·관외이전·최종부도 처리된 업체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
-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
-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※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

8.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. 5. 12.(월) ~ 5. 14.(수)
- 신청장소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(북구 산업로 915, 1층)
- 구비서류 ※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
 - 용자신청서 원본 1부【붙임 1】
 -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【붙임 2】
 - ※ 대환은 대출내역증빙(금융거래확인서) 포함 제출
 -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【붙임 3】
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【붙임 4】
 -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(해당업체에 한함)
 -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(최근 2년)
 -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 -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
 -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(최근 2개년도)
 -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
 - 가점(인증지정, 수상, 우대, 특허권, 사회공헌도) 확인서류 각 1부(해당업체에 한함) 【참고 3】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
 -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(해당업체에 한함) 사본 1부
 - ※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

- 사업장 확인서류(공장등록증, 임대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) 사본 1부
 -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부동산종합증명서)
 - 임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부동산종합증명서) + 임대계약서
- 사내협력사 증빙서류(도급계약서, 임대계약서 등) 사본 1부
-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(물품공급계약서 등) 사본 1부.
 - ※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

9. 기타사항

- 기업체 임직원의 업무대행 금지(용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)
- 용자추천 결정: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
 - ※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, 평가항목【참고 3】에 의한 **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**
- 대출취급은행 : 12개 금융기관(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iM뱅크, BNK부산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KDB산업은행, 우리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새마을금고중앙회)
 - ※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,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
- 대출취급기한 : 용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 - ※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
 - ※ **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%이상 시 1년간 용자추천 제한**
-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
-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(대환) 불가함
-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

☞ 문의 및 상담

-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(<http://www.ubpi.or.kr>) : ☎ 052-283 - 7221

[붙임 1]

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응자신청서(2025년)

접 수 번 호	기업종합지원센터-	접 수 일	
신청자금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 업종		

※ 신청자금명에 “√” 표기 하시면 됩니다.

신청업체 현황

회 사 명		사업자등록번호	-	-
대 표 자		주민(법인)번호	-	
업 태		종 목		
전 화 번 호	() -	팩 스	() -	
휴 대 전 화	- -	종 업 원 수	(상시 근로자)	명
도 로 명 주 소				
담 당 자	성 명	이 메 일		
	직 책	휴 대 전 화	-	-

자금 신청 내용

자 금 용 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	<input type="checkbox"/> 원료구입(백만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보수(백만원)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	<input type="checkbox"/> 노임지불(백만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백만원)
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환대출(기존대출 상환용)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(만기 6개월내 시자금 연장용)
신 청 금 액	금 원(W)		
상 환 계 획	<input type="checkbox"/> 2년거치 일시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2년거치 2년분할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거치 2년분할상환		

우대기업 확인

벤처	여성	전입	장애인	지산업대상 공예품대전	가족친화	창경센터 특화산업	일자리 창출우수	모범장수	구조개선

※ 해당되는 우대기업 여부에 “√” 표기 하시면 됩니다. (없을 경우 미기재)

제출서류 목록

※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.

체크	제출서류	형태	부수	설 명
	자금사용계획서	원본	1	소정양식
	개인정보 수집 동의서	원본	1	“대표자 및 담당자 한하여 인정”
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	원본	1	
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(최근2개년도)	사본	1	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
	사업자등록증명원	사본	1	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에서 발급하여 제출
	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사본	1	
	표준재무제표 증명원(최근2개년도)	사본	1	
	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	사본	1	자가기장 시 기업체 확인, 세무대리인(신고인)확인
	사업장 확인서류(사내협력사 증빙서류)	사본	1	- 공장등록증, 건축물대장, 임대계약서 등 - 로급계약서, 임대계약서 등
	이차보전우대기업 확인서류	사본	1	
	가점(인증, 수상, 우대, 특허권, 사회공헌도) 확인서류	사본	각 1	“ 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”

※ 상기 신청서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관리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신청인

인

울 산 경 제 일 자 리 진 흥 원 장 귀 하

【붙임 2】

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			
업 체 명		대 표 자	
신청금액	일금	원정(W))
자 금 사 용 처(해당 내용에만 작성) ※ 양식 임의변경 불가			
1. 사업기간 : ~			
2. 자금용도 :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운전자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자금 대환(금융거래확인서 필수)			
3. 세부사업별 소요자금(산출근거)			
《유 의 사 항》			
1.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,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(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FAX: 700-7139) ◦ 대출금 입금통장사본, 계좌이체 내역,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◦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, 또는 자금 사후관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<u>회수</u> 또는 <u>중단</u> 될 수 있습니다. (자필 작성) 			
2.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·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			
3.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, 대표자변경, 상호변경, 휴·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(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)			
※ 공장 신·증·개축비, 부동산(공장, 부지)매입비, 기계장치구입비, 유가증권 구입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 취급 확인			
은행명(지점명)/보증기관명(지점명)			직 책:
담 보 조 건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증서		연락처:
대 출 취 급 금 액	금 백만원		성 명: (인)
상 담 일 자	20		
위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, 울산광역시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
위 내용을 <u>확인</u> 하였으며,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절차에 동의 합니다. (자필 작성)			
신청인			①

※ 기존자금 대환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.

【붙임 3】

개인(법인)정보 수집 동의서

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_____은(는)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개인(법인)정보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.

1. 수집하는 개인(법인)정보 항목

- 업체현황 :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, 생년월일, 법인번호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, 담당자 성명, 담당자 부서명·직책·전화번호
- 대출가능 여부확인 : 상담기관 담당자, 상담기관 담당자 연락처
- 우대기업 확인 : 여성기업 유무, 전입전후사항, 장애인 등록증 등

2. 사용목적
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접수 및 심사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추천서 발급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신청 관리

3. 동의서 유효기간

이 동의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처리 기간동안 유효하며 개인(법인)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도 소멸됩니다.

4. 확인사항

개인(법인)정보 수집 동의 관련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개인(법인)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인지하였습니다.

2025년 월 일
신청인 본인성명 _____(날인 또는 서명)

【참고 1】

제조업

- 가. 제조업 전업률 30%이상 이면서,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
- 나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-제조업 전업률 30%이상 이면서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 미만 기업으로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「공장」 또는 「제2근생-제조시설」인 제조업종 기업
- 다. 신청일 현재,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
- 라.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(전업률 30%이상)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
- 마. 제조업 중 100% 외주가공 기업(공장 무소유 제조업)

[참고 2]

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용자 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(42131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,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(42492),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(424) 은 지원 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 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22 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)
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